

제59회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참 가 요 강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차 례

□ 일 반 사 항	3
□ 시 상	3
□ 참 가 요 령	4
1. 경 기 방 법	4
2. 심 판 및 경 기 규 칙	4
3. 채 점 방 법	5
4. 참 가 자 격	5
5. 참 가 신 청	13
6. 사 전 열 람	14
7. 대 진 추 첨	15
8. 부 칙	15
9. 참 가 요 강 변 경 사 항	17

□ 경기종목별 참가요령 21

1. 육 상 23	22. 승 마 60
2. 수 영 28	23. 체 조 61
3. 축 구 32	24. 하 키 62
4. 야 구 33	25. 펜 싱 63
5. 테니스 34	26. 배드민턴 64
6. 소프트테니스 35	27. 태권도 65
7. 농 구 36	28. 조 정 66
8. 배 구 37	29. 볼 링 68
9. 탁 구 38	30. 롤 러 69
10. 핸드볼 39	31. 요 트 70
11. 럭 비 40	32. 근대5종 71
12. 자전거 41	33. 카 누 74
13. 복 싱 43	34. 골 프 76
14. 레슬링 45	35. 보디빌딩 77
15. 역 도 47	36. 우 슈 79
16. 씨 림 50	37. 핀수영 81
17. 유 도 51	38. 세팍타크로 83
18. 검 도 53	39. 바 독 84
19. 궁 도 54	40. 당 구 85
20. 양 궁 55	41. 산 악 86
21. 사 격 57	

□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채점내규 87

제59회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참가요강

□ 일반사항

1. 대회명칭: 제59회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겸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도 예선대회
2. 기 간: 2024. 5. 31.(금) ~ 6. 4.(화) / 5일간
3. 개 최 지: 양양군(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횡성군, 철원군, 양구군)
4. 주 최: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5. 주 관: 양양군, 양양군체육회, 회원종목단체
6. 후 원: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7. 종 별: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8. 경기종목: 41종목

육상, 수영, 축구, 야구소프트볼, 테니스, 소프트테니스, 농구, 배구, 탁구, 핸드볼, 럭비, 자전거, 복싱, 레슬링, 역도, 씨름, 유도, 검도, 궁도, 양궁, 사격, 승마, 체조, 하키, 펜싱, 배드민턴, 태권도, 조정, 볼링, 롤러, 근대5종, 요트, 카누, 골프, 보디빌딩, 우슈, 핀수영, 세팍타크로, 바둑, 당구, 산악

□ 시 상

- 종합시상 (1, 2부)
 1위~3위 : 우승기, 회장배, 상장
- 개인 및 단체시상 (1, 2부)
 1위~3위 : 상장, 메달
- 모범선수단상 (1, 2부)
 1위 - 회장배, 상장, 상금
- 성취상 (1, 2부)
 1위 - 회장배, 상장

□ 참가요령

1. 경기방법

가. 시·군대항전 (1, 2부)으로 한다.

- 1부 (9개시·군) :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철원군
- 2부 (9개 군) :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나. 기록경기를 제외한 모든 경기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1) 토너먼트 경기로 하되 동위자 순위전(3, 4위전 또는 5, 6, 7, 8위전)은 실시하지 않는다. (동률 3위, 5위)
- 2) 1개 시·군에서 2개 팀이 출전할 수 없다.
- 3) 토너먼트 경기로 진행되는 단체 및 개인경기 종목의 시드배정은 개최지 시·군에만 적용한다.
- 4) 승부는 경기종목별 참가요령에 의하되,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해당 경기종목의 경기규칙에 의하여 결정한다.
- 5) 1부, 2부 우승팀 (개인경기 포함)은 선발전을 할 수 있다.

2. 심판 및 경기규칙

가. 심판은 해당경기단체 공인심판원이 담당한다.

나. 경기규칙은 현행 회원종목단체 경기규칙에 의한다.

다. 경기운영은 도민체육대회 경기운영 내규에 의한다.

3. 채점방법

가. 도민체육대회 채점내규에 의한다.

나. 전 경기종목을 채점하되 토너먼트 경기로 진행되는 종목(종별) 중 1, 2부에서 1개 시·군(팀)이 참가 신청한 경우에는 회원종목단체가 정한 최소 인원 이상이 참가해야만 점수를 배점한다.(단, 도체육회와 중앙회원단체 등록 팀으로 전국단위 대회에 참가한 실적이 있는 팀은 예외로 한다.)

다. 도민체전에 참가하여 입상 하여도 기준기록에 미달되면 채점에서 제외한다. (해당종목: 육상, 수영, 역도, 양궁, 사격)

4. 참가자격

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가신청을 필한 임원·선수에 한함.

단, 고등부는 도내 학교 재학생에 한함. 다만, 학교밖 청소년으로서 **도내** 스포츠클럽 소속 선수는 학령연령에 따라 고등부에 참가할 수 있다.

나. **회원종목단체는 성전환 선수의 대회참가 자격을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기준을 준용하여 운영하되, 기준이 없는 종목은 그 종목 특수성을 고려해 공정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한다.**

다. 고등부 선수 참가자격

1) 고등부에 참가하는 선수는 등록지 시·군 소속으로 우선 참가한다.

단, 도민체육대회 개시일을 기준으로 해당학교 재적기간이 3개월이 경과되어야 하며, 1학년은 3월말 현재 재학 중인 자는 참가할 수 있다.

2) 종별 구분없이 일반부만 실시하는 종목에 참가하는 고등학교 선수는 등록지 시·군 소속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단, 등록지로 참가하지 않는 잔여선수는 시·군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아 등록기준지 또는 중학교 졸업연고지 시·군으로 참가할 수 있다.

3) 고등부가 있는 종목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선수는 대학부나 일반부에 참가할 수 없다.

- 4) 순수 단체종목(축구, 야구, 농구, 배구, 핸드볼, 럭비, 하키, 세팍타 크로, 수구)을 제외한 종목의 고등학교 선수 중 소속 시·군으로 출전하지 않는 잔여 선수는 소속 학교장과 시·군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아 등록기준지 시·군 또는 중학교 졸업연고지 시·군으로 혼성하여 참가할 수 있다. 단, 전국체전의 선발전을 겸하는 단체전으로 실시하는 개인경기 종목(소프트테니스)은 예외로 한다.
- 5) 강원체육고등학교의 선수 중 개인경기 종목에 참가하는 선수는 등록기준지 또는 중학교 졸업연고지 시·군 소속으로 참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등록기준지 및 초·중학교 졸업연고지가 타 시·도인 무연고 선수는 도민체전 개최지로 참가하며, 강원체육중학교 졸업선수는 초등학교 졸업연고지로 출전할 수 있으며, 등록기준지 및 중학교연고지 시·군 소속으로 참가하지 않는 잔여선수는 등록지(학교소재지) 시·군으로 참가할 수 있다.
- 6) 경기방법을 단체전으로 실시하는 개인경기 종목에 참가하는 강원체육고등학교 선수는 등록기준지 또는 중학교 졸업연고지 시·군으로 혼성하여 참가한다. 단, 등록기준지 및 중학교 졸업연고지가 타 시·도인 무연고 선수와 등록기준지 또는 중학교 졸업연고지 시·군으로 참가하지 않는 잔여선수도 등록지(학교소재지)시·군 소속으로 혼성하여 참가할 수 있다.
- 7) 유급 및 재수 사실이 2회 이상이거나, 유급 후 1년이 경과 또는 재수 학생이 학교를 졸업한 후 익년도에 입학하지 아니한 자는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 8) 체육특기자로서 타 시·도에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 본도로 전학한자 및 진학자는 당해년도 1학기 개학전일까지 전·입학하였을 경우에는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 9)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타 시·도 전학자는 당해년도 1학기 개학이후에 전·입학하였더라도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 ㉠ 당해 시·도 관내 해당종목 육성교가 없거나 당해 시·도에 특기자 진학을 신청하였음에도 특기자 정원이 없어 본도로 진학한 경우
- ㉡ 해당 종목팀 해체 시 당해 시·도 관내 동일 종목의 팀이 없어 본도로 진학한 경우
- ㉢ 단체경기종목(예: 축구, 야구, 농구, 배구, 핸드볼, 럭비, 하키, 수구, 세팍타크로) 중 해당 시·군에서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창단된 신설팀에 전·입학한 타시·도 선수로 전 소속 학교장의 이적동의서를 받은 경우
- ㉣ 체육특기자의 가족 중 근무지의 인사이동으로 부득이하게 전가족이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해당자 근무처 재직증명서, 인사이동 증빙서가 확인되어 전 소속 학교장의 이적동의서를 받은 자
- ㉤ 체육특기자의 가족 중 개인사업자가 생계유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전 가족이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변경 전·후 사업자등록증이 확인되어 전 소속 학교장의 이적동의서를 받은 자

라. 대학부 선수 참가자격

(종목별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대학부에 참가하는 선수는 등록된 시·군으로 우선 참가한다.
- 2) 대학부가 있는 개인경기종목 참가 우선순위
 - ㉠ 선수등록지 시·군
 - ㉡ 등록기준지 또는 초·중·고 졸업연고지로 참가하는 자는 1개교 이상 졸업하여야 한다. 단, 강원체고 졸업 선수는 중학교 졸업연고지 시·군(동의서 제출)
 - ㉢ 도내 중학교와 고등학교 졸업연고지 시·군이 다를 경우 해당선수의 동의를 받은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연고지 시·군으로 참가(동의서 제출) (해당종목: 육상, 복싱, 레슬링, 씨름, 유도, 태권도 등)
- 3) 대학부와 일반부를 통합 운영하고 있는 단체경기 종목에 참가하는 대학팀 선수 참가 우선순위

- ㉠ 소속 대학이 단일팀으로 참가할 경우에는 대학 소재지 시·군으로 우선 참가할 수 있으며,
 - ㉡ 대학선수와 일반선수를 혼성하여 참가할 경우에는 “라항 4호”의 대학부가 없는 개인 경기종목에 참가하는 대학선수의 참가 자격을 적용한다.
- 4) 대학부가 없는 개인 및 개인단체종목 참가 우선순위
- ㉠ 중·고등학교를 대학 소재지 시·군에서 졸업한 경우 대학 소재지 시·군
 - ㉡ 등록기준지 또는 초·중·고 졸업연고지로 참가하는 자는 1개교 이상 졸업하여야 한다. 단, 강원체고 졸업 선수는 중학교 졸업연고지 시·군 (동의서 제출)
 - ㉢ 도내 중학교와 고등학교 졸업연고지 시·군이 다를 경우 해당 선수의 동의를 받은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연고지 시·군 참가(동의서 제출)
 - ㉣ 선수등록지 시·군
- 5) 대학부가 있는 경기종목의 대학선수는 일반부에 참가할 수 없다.
- 6) 경기방법을 단체전으로 실시하는 개인경기종목의 대학선수는 다음과 같이 참가한다.(해당종목: 테니스, 소프트테니스, 검도, 양궁, 사격, 체조, 펜싱, 배드민턴, 볼링, 근대5종, 골프, 바둑 이상 12개 종목)
- ㉠ 단일소속(학교)으로만 구성이 되었을 경우 선수등록지로 우선 참가한다.
 - ㉡ 대학부가 있는 경기종목은 한국체대와 용인대학을 제외한 타 시·도 대학선수는 참가할 수 없으며, 도내 소재 대학선수로 선발팀을 구성할 경우 우선순위는 “라항 2호 - ㉠ ㉡ ㉢적용”을 한다.
 - ㉢ 대학부가 없는 경기종목은 해당 시·군으로 참가 자격이 있는 타 시·도 대학선수와 혼성하여 참가할 수 있다.
 - ㉣ 1개 시·군에서 2개 팀 이상 육성하는 시·군은 선수를 선발하여 혼성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 7) 사격, 볼링, 체조, 조정, 카누 종목의 단체전 경기에 단일팀(4인 이상)으로

참가한 선수는 개인전에 별도의 자격 제한을 받지 않고 단체전 단일팀 참가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단체전에 참가한 선수는 타 시·군의 소속으로 개인전에 참가할 수 없다.

- 8) 대학원, 방송통신대학 및 야간대학,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에 재학중인 경우 대학 선수가 아닌 일반부 선수의 참가 자격을 적용한다.
- 9) 군입대 준비 및 개인사정으로 휴학 중인 자는 일반부 선수의 참가자격을 적용한다.
- 10) 타 시·도 실업팀 등록선수가 학업을 위해 도내대학에 진학한 자는 참가할 수 없다.
- 11) 단체경기 종목에 타 시·도에 등록된 선수는 참가할 수 없다.
(해당종목: 축구, 야구, 농구, 배구, 핸드볼, 럭비, 하키, 세팍타크로, 수구)

마. 군인선수는 일반부에 다음과 같이 참가한다.

- 1) 단체경기 종목의 군인선수는 부대장이 확인한 주둔지 시·군의 단일팀 또는 선발팀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병사, 부사관, 장교는 군경력과 관계없이 주둔지 시·군으로 참가할 수 있다.

－ 해당종목: 축구, 야구, 농구, 배구, 핸드볼, 럭비, 하키, 세팍타크로

- 2) 개인경기 종목(개인전만 실시하는 종목)에는 아래와 같이 참가한다.

- ① 등록기준지 시·군, 현거주지, 주둔지(병사, 부사관, 장교) 또는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연고지 시·군 (동의서 제출) 단, 강원체육고등학교 졸업 선수는 중학교 졸업연고지 소속 시·군으로 참가할 수 있다.

- 3) 개인경기 단체종목(예: 테니스, 탁구, 검도 등)에는 등록기준지 시·군 또는 주둔지 시·군 소속으로 참가할 수 있다.

- ① 등록기준지 시·군으로 참가할 경우

- 등록기준지 시·군 일반선수와 혼성하여 선발팀으로 참가할 수 있고
- 등록기준지 시·군 단일팀에 군인선수를 포함하여 단일팀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 등록기준지 시·군 개인자격으로 참가할 수도 있다.

㉞ 주둔지 시·군으로 참가할 경우

- 주둔지 시·군 일반선수와 혼성하여 선발팀으로 참가할 수 있고
- 주둔지 시·군 단일팀에 군인선수를 포함하여 단일팀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 주둔지 시·군 소속 개인자격으로 참가할 수도 있다.

4) 군무원(행정)은 군인(전투)이 아니므로 일반부 선수의 참가 자격을 적용한다.

5) 공익근무요원은 일반부, 상근예비역은 군인선수(병사)의 참가자격을 적용한다.

바. 일반부 선수 참가자격

(종목별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단체경기 종목의 일반부는 다음과 같이 참가한다.

㉠ 단체경기 종목의 일반부는 등록된 시·군 소속으로 단일팀 또는 선발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단, 단일팀으로 참가할 경우에는 해당팀에서 3개월 이상(도민체전 참가신청일 기준) 재직한 자에 한하며, (단, 공무원 및 정부투자기관에 재직하는 자는 재직기간 3개월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발팀일 경우에는 개인종목 일반부 참가자격“바항 2호 - ㉠ ㉞ ㉟적용”을 한다.

㉡ 타 시·도 소속 실업팀으로 종목별 중앙경기단체에 선수 등록된 단체경기 종목의 선수 및 본도 중앙연고 실업팀 선수는 동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 해당종목: 축구, 야구, 농구, 배구, 핸드볼, 럭비, 하키, 세팍타크로, 수구

㉢ 도내실업팀(단체종목)은 2024년도 선수등록을 소정기일 내에 시·군 소속팀 명의로 등록을 필하면 시·군 소속 단일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2) 개인경기 종목의 일반부는 다음과 같이 참가한다.

㉠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초·중·고 졸업연고지로 참가한다.

단, 초·중·고 졸업연고지로 참가하는 자는 1개교 이상 졸업하여야 한다.

- ㉠ 현거주지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전년도 12월 31일 이전부터 대회 참가일까지 거주하는 곳으로 참가할 수 있다. 단, 1개월(30일) 이내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전·출입기록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도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이 편제되어 있는 자 중 도내기업체, 체육회, 교육청, 학교에 3개월 이상(도민체전 참가신청일 기준) 재직하고 있는 자는 소속 시·군으로 우선 참가할 수 있다. 단, 공무원 및 정부투자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주민등록 편제일은 “바항 2호 - ㉠적용”을 적용한다.
- ㉢ 개인 및 개인경기 단체종목의 전국 각 실업팀에 소속된 선수로서 본도에 등록기준지 또는 거주지를 둔 자는 해당 시·군으로 참가할 수 있다.
- ㉣ 도내 **직장운동경기부**(개인종목)은 소정기일 내에 시·군 소속팀 명의로 선수 등록을 필하면 해당소속 시·군으로 참가할 수 있다. 단, 등록기준지로 참가할 경우 참가자격 “바항 2호 - ㉠적용”, 현거주지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2024년 2월 29일 이전부터 대회 참가일까지 거주하는 곳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청 및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소속 실업팀 선수는 당해년도 도민체전 개최지 시·군으로 참가한다. 단, 개최지로 출전하지 않는 잔여 선수는 등록기준지로 참가할 수 있다.
- ㉤ 경기방법을 단체전으로 실시하는 개인종목에 한하여 단일소속(직장 단일팀)인원만으로 구성이 되었을 경우 등록지로 참가할 수 있다. 단, 해당기관 및 기업체에 3개월이상(도민체전 참가신청일 기준) 재직한 자에 한함. (해당종목: 테니스, 소프트테니스, 탁구, 검도, 궁도, 양궁, 사격, 체조, 펜싱, 배드민턴, 볼링, 근대5종, 골프, 바둑)
- ㉥ 사격, 볼링, 체조, 조정, 카누 종목의 단체경기(4인이상)에 단일팀으로 참가한 선수는 개인전에 별도의 자격 제한을 받지 않고 단체전 단일팀 참가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단체전에 참가한 선수는 타 시·군 소속으로 개인전에 참가할 수 없다.

◎ 개인경기 종목의 일반부에 참가하는 선수는 2006년 9월 1일 이전에 출생한 자에 한하여 참가할 수 있다. 다만, 2006년 9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는 참가할 수 있으며(졸업 증명서 첨부) 일반부만 있는 경기종목은 연령을 제한하지 않는다.

사. 2개 지역 이상 참가 자격이 있는 자는 본인의 동의서를 첨부한 시·군에 참가 자격을 인정한다.

아. 동일인이 1개 경기부문 이외의 타 경기부문에 참가할 수 없다. 경기 부문이라 함은 육상, 수영, 축구 등의 경기 분야를 말한다.
(예: 레슬링 경기부문에 참가하는 선수가 씨름, 유도 등의 타 경기 종목에 참가할 수 없다.)

자. 대회장(경기장) 참석시에는 반드시 일반부(군인선수 포함)는 주민등록증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학생부(고·대학생)는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하며, 경기진행 임원의 제시 요구가 있을 때 제시하지 않으면 실격으로 처리한다.

차. 참가신청마감 이후 선수의 자격(신분)에 변동이 있을 경우 대회참가는 참가신청마감 당시의 소속으로 한다. 단, 고등부 선수는 참가자격 “다항 1호”를 적용한다.

카. 경기단체 임원중 심판으로 배정된 자 및 대회임원,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배정 지도자는 선수로 참가할 수 없다.

타.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및 종목별 회원종목단체에 기존 육성팀으로 등록된 선수가 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할 경우에는 해당 선수등록 종목에만 참가 신청할 수 있다.

단, 동계종목 및 도민체전 미개최 종목(시범종목 포함)과 개최 종목 중 미개최 종별 하계종목은 예외로 한다.

파. 등록기준지로 참가 시 등록기준지의 기준일은 2019. 1. 1.로 한다.

5. 참가신청

가. 신청마감 : 2024. 3. 28.(목), 18:00

나. 신청장소 : 제59회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전산화 시스템

다. 참가신청 : 종목별 참가요령에 의함

라. 신청방법 : 시·군체육회 책임자가 직접 전산입력

마. 구비서류 : **참가신청서 구비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전열람 기간 중 이의신청된 해당 선수에 대하여 다음의 서류 중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재학증명서 1부 (고등부 및 대학부)
(단, 선수의 생년월일 및 재적 연·월·일이 명시되어야 함)
- 2) 등록기준지 참가자는 기본증명서 1부.
(본인의 기재사항이 생략되지 않은 것에 한함. 단, 순수 단체종목에 출전하는 남자선수는 병적증명서 첨부)
- 3) 현 거주지 참가자는 주민등록초본 1부.
(단, 거주일자가 명시되어야 하며, 남자선수는 병역사항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 4) 초·중·고등학교 졸업 연고지로 참가하는 대학 및 군인, 일반선수는 재학 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와 초·중·고등학교 졸업증명서 각 1부.
- 5) 군인선수 또는 단체(개인단체포함)는 부대장 발행의 복무확인서 1부.
(주둔지 주소 기입 필수)
- 6) 개인경기 종목의 단체전에 참가하는 단일팀은 소속 기관장의 재직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각 1부.
- 7) 공무원 또는 기업체 직원이 근무처 소재 시·군으로 참가할 경우 기본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및 재직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각 1부.
- 8) 고등학생으로서 등록기준지 또는 중학교 졸업연고지 참가를 희망하는 선수는 기본증명서 또는 중학교 졸업증명서와 학교장 승인서, 소재 시·군체육회장 동의서 각 1부. (참가자격“다항 4호”참조)

9) 일반부 단체전에 참가하는 단일팀은 소속기관장의 연명 재직증명서 및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각 1부.

(재직증명서는 입사 년월일이 기재된 것에 한하여 인정됨)

10) 일반부에 참가하는 자(1994년~2005년생)중 주민등록초본에 병적사항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 병적증명서 1부.

11) 사격의 전 세부종목에 참가하는 선수는 총기소지허가서를 지참한 자에 한하여 참가할 수 있다. 단, 산탄총에 참가하는 선수는 당해년도 도민체전 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대한사격연맹 등록선수에 한한다.

12) 각종 구비서류는 대회개최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하여 유효함.

바. 참가신청 마감 이후의 추가신청은 일체 불가함.

6. 사전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4. 4. 12.(금) ~ 4. 18.(목), 7일간

나. 장 소 : 제59회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전산시스템

다. 조 치 : 참가신청 마감 후 시·군 책임자가 해당 종목의 참가신청서를 열람하여 이상이 있으면, 즉시 이의신청을 해야하며,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에서는 이를 조사 처리하되, 열람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되는 이의신청서 또는 소청서는 일체 처리하지 아니한다.

단, 경기진행시 회원종목단체에서 무자격 선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이의 신청할 경우에는 조사 처리함.

라. 열람확인서 제출 : 2024. 4. 19.(금), 18:00까지 공문포함 제출.

7. 대진추첨 ※준비상황보고회와 병행 계획

가. 일 시 : 2024. 4. 23.(화), 11:00(예정)

나. 장 소 : 양양군

다. 진행방법

- 1) 제59회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전산시스템 자동프로그램
- 2) 토너먼트 종목 대진추첨
- 3) 시·군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참관 가능

8. 부 칙

가. 전국체육대회에 도단위 선발팀을 구성 참가하여야 할 경기 종목의 선수 선발은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에서 결정한다.

나. 필요에 따라 종목별 재 선발대회 또는 평가전을 개최하여 대표선수를 재조정한다.

다. 본도 중앙연고, 도연고, 도내 기업체, 시·군 **직장운동경기부팀**은 전국 체육대회에 도대표팀으로 우선 참가한다. 단,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선발대회를 별도로 개최하여 대표팀을 결정할 수 있다.

- 도연고 직장운동경기부팀: 화천KSPO(축구)
- 시·군 직장운동경기부팀: 삼척시청 핸드볼

부상선수 교체

- 참가신청 마감 후 훈련 중 부상선수는 대회개막 7일전
(2024. 5. 24. 15시) 까지 유자격 선수로 교체할 수 있음.
단, 부상선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 제1항에 의한
병원장 또는 보건소장 발행의 진단서를 첨부 해야함.
- 제3조(신체검사실시의료기관) ①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0.8.13, 1994.12.23, 1998.12.31,
2005.12.30>
1.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2. 「의료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병원
 3. 「의료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
 4. 삭제<1998.12.31>

참가요강 변경사항

□ 참가자격 변경사항

1. 참가자격

구분	현행	변경	비고
참가자격	나.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및 회원 종목별 선수등록을 소정 기일 내에 필한 자	나. (삭제)	-자구수정
		나. (신설) <u>회원종목단체는 성전 환 선수의 대회참가 자격을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기준을 준용하되, 기준이 없 는 종목은 그 종목 특수성을 고려해 공정한 기준을 정하 여 운영한다.</u>	-성정환 선수에 대한 자격기준 마련

2. 종목운영

구분	현행	변경	비고
소프트 테니스	○ 경기 방법 <u>-단체전</u>	○ 경기 방법 <u>-단체전, 개인복식</u>	-세부 종별 신설
씨름	○종별 신설 <u>-고등부, 대학부, 일반부</u>	○종별 신설 <u>-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여자부(고,대,일)</u>	-세부 종별 신설
검도	○종별 신설 <u>- 고등부,일반부</u>	○종별 신설 <u>-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여자부(고,대,일)</u>	-세부 종별 신설
하키	○참가 자격 <u>-고등부는 단일팀</u>	○참가 자격 <u>-고등부는 단일팀 (지정·등록스포츠클럽 포함)</u>	-확대적용
골프	○경기 방법 <u>-<신설></u>	○경기 방법 <u>사. 마커제도 운영 (사·군경기임원을 활용하여 마커 제도를 운영한다.)</u>	-공정한 경기운영
우슈	○경기 종목 <u>-산타 남고부(-56kg,-60kg,-65kg)</u>	○경기 종목 <u>-산타 남고부(-60kg,-65kg,-70kg)</u>	-남고부 개선운영

3. 참가인원

구분	현행	변경	비고
야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가 인원 - 감독, 코치, 주무 외 선수 18명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식종목 전환 - 감독, 코치, 주무 외 선수 18명 이내(고등부는 20명 이내) 	-참가선수단 현실화
사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가 인원 - 단체전: 공기총 4명 전원 참가 화약총 3명이상 참가하여 3명의 상위기록 합계로 순위를 정하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가 인원 -단체전: 3~4명이 출전하여 상위 기록 3명의 기록 합계로 순위를 정하며, 	-단체전 자구수정

3.변경근거 :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규정 제6조(사업 및 권한)에 의거 2023 강원특별자치도 종합체육대회 운영개선평가회(11. 22) 및 2023. 도민체육대회위원회(12. 14.) 심의·결정되었으며, 동 규정에 의거 개정된 내용은 2024년도 대회부터 시행함.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채점내규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채점 내규

제정.	2016. 03. 15.
일부개정.	2023. 05. 19.
일부개정.	2024. 01. 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내규는 도민체육대회의 시·군별 순위결정을 위한 채점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점) 채점은 1부, 2부로 나누어 시·군별로 종합 채점한다.

제2장 채점

제3조(종합순위결정) 시·군별 종합순위는 경기부문별로 획득한 점수의 총계로 하며, 전산채점프로그램에 의하여 모든경기 종료 후 결정한다. <개정 2024. 01. 15.>

제4조(경기부문의 종합득점) 경기부문별 종합득점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frac{\text{시·군별 득점합계}}{\text{종별, 체급별, 세부종목별 득점총계}} \times \text{해당 시·군의 종별, 체급별 획득점수} \times 100 = \text{해당 시·군의 종합득점}$$

(설명) 시·군별 득점 합계는 해당 경기부문에 참가한 시·군의 수에 따라 최하의 시·군을 1점으로 하고 순차적으로 1점씩 가산한

점수의 합계를 말함

예 : 8개 시·군 참가 - 1, 2, 3, 4, ... 8 = 36점

9개 시·군 참가 - 1, 2, 3, 4, ... 9 = 45점

(설명) 종별, 체급별, 세부종목별 득점의 총계는 경기부문내에서 종별 (남고, 여고, 남대, 여대, 남일반, 여일반) 체급별(핀급, 플라이급등) 세부종목(100m, 200m등)로 획득한 점수의 시·군별 총계를 말함. (설명) 해당 시·군의 종별, 체급별, 세부종목별 획득점수는 경기부문내에서 해당 시·군이 종별 또는 체급별 세부종목별에서 획득한 점수의 합계를 말함.

제5조(부문순위결정) 시·군의 부별(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순위는 전항에 준하여 채점하며, 단축마라톤은 고등학교 남·여 대학부, 남 일반부 남·여로 채점한다.

제6조(종합득점이동점인경우순위결정) 시·군별 종합 및 각부별 총득점이 동점인 시·군이 있을때에는 1위 경기부문수가 많은 시·군을 상위로 하고, 1위 경기부문수가 같을 때에는 2위 경기부문수가 많은 시·군을, 2위 경기부문수가 같을 때에는 3위 경기부문수가 많은 시·군을 상위로 정한다. 단, 경기부문이라 함은 당해연도 개최종목을 말한다.(육상 경기부문의 순위는 트랙, 필드, 마라톤의 시·군별 득점의 합계로 정한다.) <개정 2024. 01. 15.>

제7조(순위전을 못할 경우 배점) 부득이한 경우 순위전을 행하지 못할 때에는 동위자수에 해당하는 차위점수를 합산하여 동위자수로 등분 배점한다.

제8조(동위자배점) 동위자가 2명이상일 때에는 해당등위 점수와 동위자수에 해당하는 차위점수를 합산하여 이를 동위자수로 등분 배점한다.

제9조(기권, 몰수, 불출전, 채점) 기권, 몰수, 또는 불출전 할 때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0점으로 한다. 다만, 경기규칙에 따라 경기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의 기권과 경기몰수는 해당 경기단체가 결정하되 채점여부는 회원종목단체의 사유서를 소청 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시범경기채점) 개최종목 중 시범경기로 운영되는 세부 종목은 채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01. 15.>

제11조(경기부문별채점) 각 경기부문별 채점은 회원종목단체(경기기록책임자) 책임하에 채점하되, 대회본부기록부의 채점기록의 대조 확인하여 기록부장에게 제출한다.

제12조(토너먼트경기채점) 토너먼트 경기의 종별(체급별) 채점은 다음과 같이 5위까지만 채점한다.

등 위	1위	2위	3위	5위	계
배 점	8점	7점	5.5점	2.5점	36점
팀 수	1팀	1팀	2팀	4팀	8팀

제3장 기록경기 및 종목별 채점

제13조(신기록가산채점) 기록경기과 토너먼트경기가 아닌 종목의 채점은 경기종목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음 각조와 같이 하되 기록경기에 있어서 신기록이 수립될 경우에는 신기록

수립선수 또는 단체가 획득한 점수에 다음과 같이 가산 채점한다.

가) 가산비율

세계신기록 = 300%

세계타이기록 = 200%

세계주니어신기록 = 160%

세계주니어타이기록 = 100%

한국신기록 = 200%

한국타이기록 = 60%

한국주니어신기록 = 60%

한국주니어타이기록 = 50%

대회신기록(한국, 학생신기록포함) = 50%

나) 신기록중 내용에 있어서 종전에 수립된 기록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해당경기단체가 신기록으로 인정할지라도 가산채점은 하지 않는다. 다만, 대회기간 중 예선에서 수립된 신기록에 미달되는 결승기록은 가산 채점한다.

다) 세부종목에 있어서 경기규칙에 따라 신기록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자 또는 해당팀(계주)이 획득한 점수에 가산 채점을 한다. 다만, 채점대상선수(당해종목에서)가 1개이상 신기록을 수립한 경우에 상위 신기록을 가산 채점한다.

라) 가산 채점한 점수가 자연수가 아닌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14조(기록경기채점) 기록경기(개인, 단체전)의 채점은 종목별 채점 요령에 의하여 채점한다.

- 해당종목(20개 종목) : 육상, 수영(경영), 자전거, 역도, 양궁, 사격, 승마, 체조, 조정, 볼링, 롤러, 요트, 근대5종, 카누, 보디빌딩, 우슈(투로), 궁도, 골프, 편수영, 산악 <개정 2024. 01. 15.>

제15조(육상채점) 육상경기부문은 트랙, 필드, 마라톤을 각각 1개 경기부문으로 간주하여 배점한다. (단, 기준기록 미달자 채점에서 제외)

- (1) 트랙, 필드경기의 채점은 종목별 6위까지의 입선자만 채점하되 1개 시·군에 2인 이상이 입선할 때에는 상위자만 채점한다.

등 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배 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참가하여도 입선 또는 득점하지 아니한 시·군은 경기부문 참가 시·군의 수에 참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점하지 않는다)

- (2) 마라톤 경기부문의 채점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한시간 내에 골인한 선수 전원에 대하여 채점하되 최하위자를 1점으로 하고 순차적으로 1점씩 가산한다.

나. 단축마라톤의 남고, 여고, 남대, 남일반, 여일반을 각각 별도로 채점하여 시·군별 순위를 결정 최하위 시·군

을 1점으로 하고, 순차적으로 1점씩 가산하여(제한시간 내에 골인한 선수가 없는 시·군은 채점대상은 되나 0점이 되며, 최하위 시·군이 된다. 단, 0점의 시·군이 2개 시·군일 경우 최하위가 2개 시·군이므로 배점 3점부터 1점씩 가산한다)배점한 단축마라톤의 남고, 여고, 남대, 남일반, 여일반의 점수합계를 마라톤부의 세부종목별 득점총계로 한다.

제16조(자전거점수) 자전거경기부문의 채점은 벨로드롬경기와 도로경기에 채점된 점수를 모두 합하여 채점한다.

- (1) 채점은 종목별 6위까지의 입선자만 채점하되 1개 시·군에 2인이상이 입선할 때에는 상위자만 채점한다.

등 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벨로드롬경기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도 로 경 기	12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 (2) 단체추발 및 개인도로(단체)경기는 참가 시·군의 최상위 단체를 8점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1점씩 감하여 배점한다.
- (3) 참가하여도 입선 또는 득점하지 아니한 시·군은 경기 부문 참가 시·군의 수에 참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점하지 않는다.

제17조(수영, 핀수영채점)

- 1) 수영(경영) 및 핀수영 종목의 채점은 종목별 6위까지의

입선자만 채점하되, 1개 시·군에 2인 이상이 입선할 때에는 상위자만 채점한다.(단, 수영종목은 기준기록 미달자 채점에서 제외) <개정 2024. 01. 15.>

등 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배 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2) 수구종목의 채점은 토너먼트 경기채점과 같이하되, 6배로 가산 배점한다.

등 위	1위	2위	3위	5위
배 점	48점	42점	33점	15점
팀 수	1팀	1팀	2팀	4팀

(참가하여도 입선 또는 득점하지 아니한 시·군은 경기부문 참가 시·군의 수에 참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점하지 않는다.

제18조(역도, 보디빌딩채점) 역도, 보디빌딩 경기부문의 채점은 체급별 참가자 중 1위를 8점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8위까지만 채점하되, 1개 시·군에 2명 이상이 입선할 경우 전원 채점한다. 역도 경기부문의 인상, 용상 채점은 1위 3점, 2위 2점, 3위 1점으로 전원 채점한다.

등 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배 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단, 역도종목 기준기록 미달자 채점에서 제외)

제19조(승마채점) 승마 경기부문의 채점은 참가자중 1위를 8

점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8위까지만 채점한다.

등 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배 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다만, 8위이내에 동일 시·군이 2인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상위자만 채점하며, 차하위 시·군선수가 해당자 순위를 승계토록하여 채점한다.

제20조(체조, 양궁, 근대5종채점)

(1) 체조, 양궁, 근대5종 경기부문의 채점은 단체전 기록의 최상위 시·군을 8점으로 하여 8위까지만 채점한 점수와 개인순위(체조는 세부 종목별, 양궁은 거리별 : 개인종합포함) 1위 3점, 2위 2점, 3위 1점의 개인득점(전원채점)을 합산하여 채점한다.(단, 양궁종목 기준기록 미달자 채점에서 제외)

등 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단체배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개인배점	3점	2점	1점	×	×	×	×	×

(2) 경기부문별 종합득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단체전 기록을 합하여(전종별, 전종목) 기록이 상위인 시·군을 상위로 한다.

제21조(볼링채점) 볼링 경기부문의 채점은 단체전(3인조, 5인조)의 최상위 시·군을 8점으로 하여 8위까지만 채점한 점수와 개인전(마스터즈) 1위 3점, 2위 2점, 3위 1점의 개인득점을 합산하여 채점한다. 다만, 단체전 경기에서 8위이내와 개인경

기의 3위이내에 동일 시·군이 2팀(인)이상이 있을 경우 상위자만 채점하며, 차하위 시·군의 선수가 해당자 순위를 승계토록 채점한다.

등 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단체배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개인배점	3점	2점	1점	×	×	×	×	×

제22조(롤러) 롤러 경기부문의 채점은 종목별 6위까지만 채점하되, 1개시·군에 2인 이상이 입선할 때에는 상위자만 채점한다. 1,000m계주는 단체전으로 메달 가산 채점한다.

등 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배 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참가하여도 입선 또는 득점하지 아니한 시·군은 경기부문 참가 시·군의 수에 참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점하지 않는다.)

제23조(조정, 요트, 카누채점) 조정, 요트, 카누경기부문의 채점은 종목별 8위까지만 다음과 같이 배점한다.

등 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배 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경기에 참가하여 8위 이내에 해당하지 아니한 시·군은 제4조의 경기부문에 참가한 시·군의 수에는 포함되나 0점 처리된다.)

제24조(사격채점) 사격 경기부문의 채점은 단체전 기록의 최

상위 시·군을 8점으로 하여 8위까지만 채점한 점수와 개인전 점수를 합산하여 채점한다.

(1) 개인전과 단체전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종목(공기소총, 공기권총, 트랩, 스키트)

등 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단체배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개인배점	3점	2점	1점	×	×	×	×	×

※ 기준기록 미달자 채점에서 제외

제25조(궁도, 골프채점) 단체전 기록이 최하위인 시·군을 1점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1점씩 가산하여 채점하고 개인전은 1위 3점, 2위 2점, 3위 1점으로 채점한다.

예 : 9개 시·군 참가 - 1위 9점 ... 5위 5점 ... 9위 1점

제26조(우슈) ① 1개 시·군에서 세부종목(장권, 태극권, 남권)에 2명이 입선할 경우 상위자만 채점하고 차하위 시·군 선수가 해당자 순위를 승계하여 채점한다.(단, 메달점수는 승계하지 않음) <개정 2024. 01. 15.>

등 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배 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② 산타종목 채점은 체급별 5위까지 배점한다.

등 위	1위	2위	3위	5위
배 점	8점	7점	5.5점	2.5점
인 원	1	1	2	4

제27조(직장운동경기부팀 가산채점) 삭제 <개정 2024. 01. 15.>

제4장 메달가산 채점

제28조(메달가산 채점)

(1) 개인 및 단체가 획득한 금, 은, 동메달을 다음과 같이 배점하여 종합득점에 가산한다.

구 분	개인경기	단체경기
금메달	80점	120점
은메달	40점	60점
동메달	20점	40점

(2) 개인경기종목은 순수개인 경기종목이며, 개인경기 종목중 단체전 종목과 육상계주 및 수영계영, 자전거 단체전(도로단체 포함) 롤러계주, 볼링(3인조전, 5인조전), 조정(에이트, 쿼터러플스컬), 카누 K4종목은 단체경기로 배점한다.

(3) 동위자수가 2명 이상 일 때는 당해 동위자수에 해당하는 차위 메달점수를 합산하여 이를 동위자수로 등분 배점하되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부칙(2016. 03. 15.)

제29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도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부터 적용한다.

부칙(2023. 05. 19.)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회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01. 15.)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회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